

채용질서 위반행위 신고 안내



- ➔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 ▶ 온라인민원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고 검색)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 지역협력과)

채용질서 위반행위 처분사례



- ➔ A운수회사는 '24.7월 온라인 채용포털에 버스 운전기사를 모집하면서 이력서에 구직자의 키, 체중, 혼인 여부를 기재 하도록 하고,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

과태료 150만원 부과

- ➔ B기업은 채용과정에서 채용신체검사서(배치전건강진단) 발급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시정명령 (비용 지급 / 미이행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 C업체는 이력서에 중·고등학교 등 출신지역과 가족의 동거 여부 기재 요구하여 직무와 무관한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 정보를 수집

과태료 150만원 부과



지역별 문의처

행정구역	지방관서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서울청 02-2250-5814
	강남구	서울강남지청 02-3465-8406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동부지청 02-2142-8508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부지청 02-2077-6113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남부지청 02-2639-2344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서울북부지청 02-950-9731
경기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관악지청 02-3282-9125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경기청 031-259-0352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청 031-850-7714
	고양시, 파주시	고양지청 031-931-2908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성남지청 031-788-1582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지청 031-463-7387
충부	안산시, 시흥시	안산지청 031-412-1914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지청 031-646-1123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충부청 032-460-4540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인천북부지청 032-540-5726
	부천시, 김포시	부천시청 032-320-8963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기평군	강원지청 033-269-3534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강릉지청 033-650-2531
	원주시, 횡성군	원주지청 033-769-0831
	태백시, 삼척시	태백지청 033-550-8606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출장소 033-371-6263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청 051-850-6327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동부지청 051-559-6660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북부지청 051-330-9811
	창원시, 창원군, 함안군, 의령군	창원지청 055-239-6523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울산지청 052-228-1821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중구	울산동부지청 052-259-3482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양산지청 055-370-0915
	진주시, 사천시, 함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진주지청 055-760-6541
대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지청 055-650-1935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대구청 053-667-6319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구미국가산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053-605-9009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지청 054-271-6774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단	구미지청 054-450-3572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영주지청 054-639-1175
광주	인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안동지청 054-851-8017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시자치도	광주청 062-975-6257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주지청 063-240-3321
	익산시, 김제시	익산지청 063-839-0004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군산지청 063-450-0514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목포지청 061-280-0112
대전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여수지청 061-650-011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대전청 042-480-6225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청주지청 043-299-1113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천안지청 041-560-2813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충주지청 043-840-4028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보령지청 041-930-6111
서산시, 태안군	서산지청 041-661-5629	

www.moel.go.kr

구직자에게는 권익을,
기업에게는 인재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도입하고 싶다면?



① 일터혁신 컨설팅(공정채용 분야)

- ✔ 기업 경영목표, 인재상에 맞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업 채용제도 진단 후 맞춤형 무료컨설팅을 제공
 -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신청방법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
 - 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② 컨설팅신청 ▶ ③ 자가진단 및 신청 ▶ ④ “공정채용” 분야 선택

② 공정채용 기업교육

- ✔ 기업 CEO·채용담당자, 평가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 지원내용 기업의 채용진단을 통한 능력중심 채용모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채용인프라 구축·지원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 (단, 인하우스 교육은 10인 이상 참여 필요)
 - 신청방법 공정채용 누리집(www.ncs.go.kr/blind/index.do)에서 신청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때,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도전하는 청년에게 72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지원내용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기업에 채용 장려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
 - *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가능

④ 수도권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6·9·12개월 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⑤ 비수도권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6·9·12개월 차),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720만원 지원(6·12·18·24개월 차)

- 지원대상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기업) 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청년)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채용단계별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채용광고 및 지원서 접수단계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4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의3)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혼인여부는 기혼, 미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유무·연령·수, 시부모 유무, 출산계획, 자녀계획 등 혼인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법 제5조)

* 활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 고용노동부 누리집(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검색)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6조)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채용)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지방관서 노동기준조사과



채용 심사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의2)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법 제9조)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시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채용 확정 단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 제10조)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① 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및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예외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시간

②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 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6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